

## 사업자단체활동지침 개정, 고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 12. 18.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단체활동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기로 의결하였다.

현행 지침내용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주로 규정하고 있고, 범위반 행위의 유형별 사례가 불분명하고 부족하여 사업자단체가 범위반 여부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동 지침의 개정은 1997. 4. 1. 개정된 이후 법개정 내용, 위원회의 심결을 통해 확립된 심결례, 법원의 판례, 외국사례 및 질의회신 내용 등을 현행 지침에 반영하여 사업자단체가 활동시 “해야 할 행위”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동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정의를 기초로 “사업자단체”의 개념을 구체화하였고, 기존 지침내용을 법체계에 맞게 정리하였다.

즉, “공동회사설립행위의 금지”, “사업자수 제한 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구성사업자 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행위”에 포함되어 규정되었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와 “가격에 관한 행위”에 포함되어 규정되었던 “재판 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별도로 신설하였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58조 규정과 관련, 행정지도 관련 행위를 신설하였다.

※ 「사업자단체활동지침」 개정안 전문은 본지의 부록(63면 이하) 참고.

## 제12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 12. 14(토)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다케시마(竹島 一彦) 위원장 등 일본 경쟁당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동 협의회는 금년이 12회째로 양국 경쟁당국의 최고 책임자들이 만나 경쟁법·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 및 관심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과 양국 간 협력관계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일 양국의 최근 경쟁정

책 동향과 주요 심결사례, 양국간 협력방안 등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근 경쟁정책 동향에서 있어서 우리측은 인터넷 확대 등 경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보호기능 강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보급 등에 대해 소개하고, 일본측은 경쟁정책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Grand Design)하에 진행되고 있는 독점금지법의 개정, 체제 강화작업 등에 대

해 설명하였고, 주요 심결사례 소개에서 우리측은 산업별 개선대책, 기업결합(M&A), 담합(Cartel) 분야를, 일본측도 기업결합, 담합 분야의 주요 사례를 설명하였다.

또한 양국간의 협력방안과 관련하여 향후 한·일 FTA 추진시 경쟁정책 분야의 협력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아울러 우리측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한·중·일 3국간 경쟁정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북아 3국(한·중·일) 경쟁당국간 정례 협의회」를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경쟁협력체(Asia Competition Network)를 설립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다.

참고로 일본 공취위의 증장기계획(Grand Design)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시장환경의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이에 따라 공취위는 21세기에 맞는 경쟁정책 확립을 위한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을 발표('01. 11월)하고 3대 운용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중인데, 첫째, 침체에 있는 일본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개혁을 촉진하고 자유롭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금벌의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고, 둘째, 규제개혁 및 경쟁저해요인의 제거를 통해 시장기능을 확대하고, 개방된 시장으로의 전환, 고비용 구조의 시정 등을 도모하며, 특히, 통신·전력 등 전통적인 규제산업에서의 경쟁적 시장 조성에 주력하고, 셋째,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상품선택의 적정화 및 중소기업에 위한 공정한 경쟁환경의 정비를 도모할 방침이다.

## 은행여신 관련 10개 부속약정서에 대한 표준약관제·개정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 12. 5.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청구 한 「은행여신 관련 10개 부속약정서에 대한 표준약관」의 제·개정을 승인하였다.

승인된 표준약관 중 개정된 부분은 여신거래약정서 I (기업용), 대출거래약정서 I (가계용), 제정된 부분은 여신거래약정서 II (기업용 : 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용), 대출거래약정서 II (가계용 : 종합통장자동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용), 지급보증거래약정서(기업용), 지급보증거래약정서(가계용), 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보증서, 근보증서 등이다.

이번 부속약정서에 관한 표준약관 제·개정은

여신거래계약의 일체를 이루는 개별약정서의 공정화를 통하여 은행여신(대출)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보다 강화함과 동시에,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여신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등 여신관행을 혁신하여 선진금융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제·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계용·기업용 공통으로, 여신거래약정서나 대출거래약정서상의 인지세 부담주체와 저당권·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과 고객이 명확히 계약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은행간 고객유치 경쟁을 유도하고 고객의 거래은행 선택의 폭을 넓

히고, 현행 약정서 형식이 대출신청서 형식으로 되어 있어 채무자와 보증인의 서명날인만 받고 약정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바, 채무자·보증인·(근)저당권설정자 등에 대한 은행의 약정서 교부를 의무화하며, 주 채무의 변제기일이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의 상태가 도래한 경우에는 보증인이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등의 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저당권의 의미나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등과 (근)보증서에 연대보증의 의미, 최고·검색의 항변권 등의 용어, 연대보증 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등의 해설을 주석으로 달아 고객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한편, 기업용은 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기업여신의 경우, 은행이 여신을 줄이거나 여신실행을 중지할 수 있는 사유를 객관화하여 은행의 자의적인 여신의 감액과 정지를 제한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도록 하고, 현행 지급보증거래약정서(기업용)가 은행의 재량에 따라 지급보증한도액이나 지급보증거래기간을 넘어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보증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초과보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여 지급보증 은행의 초과보증을 제한하

였으며, 은행은 인적담보로서 연대보증인 및 물적담보로서 저당권 등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중으로 백지어음을 담보로 요구하고 보충권까지 수여 받는 것은 과도한 담보의 설정이므로 은행의 지급보증시 기업의 백지어음 제공의무를 삭제하였고, 신용등급이 열위한 기업이나 기업구조개선작업(Work out), 사적화위가 진행중인 기업처럼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은행의 효율적인 여신관리를 위하여 기업의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기업대출에 대한 여신사후감리(Loan Review) 및 외환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파악,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은행이 재무제표 등이나 외환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전국은행연합회는 동 표준약관의 시행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전산시스템 개발, 은행내규 개정, 실무침서서 발간 등의 관련 세부사항을 추진하고, 은행 이외에 유사한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상기 제2금융권 등에도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사용권고에 이어 동 표준약관들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번 제·개정된 표준약관들은 은행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준비가 되는 은행부터 시행하되 가급적 2003. 3. 1부터는 전 은행이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 세탁업 『표준약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탁물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이에 대한 세탁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세탁업 분야에 있어

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탁업 표준약관』을 2002. 12. 5. 승인하였다.

세탁업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

유업종으로서 소비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설비를 갖추지 않은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세탁물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세탁물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자책임의 입증 곤란·원인규명의 어려움·세탁업자의 영세성·보상기준이 되는 구입가나 구입시기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세탁업자와 소비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탁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증에 계약의 주요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인수증 교부를 의무화하며, 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구입금액·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토록 하였다.

둘째, 세탁업의 계속적 거래의 특성과 세탁물에 대한 하자책임의 입증과 원인규명의 곤란을 고려하여 세탁업 분야의 거래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에 대한 세탁업자의 면책을 규정하였다.

셋째, 고객이 세탁물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는 경우의 세탁업자 임의처분 조건을 명시하고, 아울러 임의처분 전에 회수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세탁물 회수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구입금액 20만원 미만 세탁물인 경우에는 고객이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거나 세탁물 회수를 통보받고 30일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않을 때, 20만원 이상의 세탁물인 경우에는 세탁료 및 보관료의 합산액이 '세탁물의 구입가격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배상비율'을 초과할 때, 세탁물을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의처분 전의 통지는 세탁업자가 2주일 이상으로 정한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토록 하였다.

## 2002. 11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공정위는 2002년 11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11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2년 11월중 출자총액·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수는 2002. 11. 1. 363개에서 2002. 12. 2. 현재 360개로 3개사가 감소하였고,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2. 11. 1. 365개사에서 2002. 12. 2. 현재 368개로 3개사가 증가하여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수는 2002. 11. 1. 현재 728개에서 2002. 12. 2. 현재 728로 변동이 없다.

\* 출자총액·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제외

2002. 11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2. 11. 1.	편 입			제 외					증감	2002. 12. 2.
		회사 설립	주식취득 및 기타	계	합병	매각	청산	친족 분리	계		
전 체	728	4	2	6	1	2	3	-	6	0	728
출자총액·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363	1	-	1	1	-	3	-	4	-3	360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365	3	2	5	-	2	-	-	2	3	368

\* 출자총액·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제외

2002. 11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6개사(회사설립 4, 주식취득 2)      □ 제외 : 6개사(합병 1, 지분매각 2, 청산종결 3)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한 화	군포에코텍(주)	하수처리관리 운영	회사설립	-	-	-
제 일 제 당	씨제이 올리브영(주)	건강.미용관련 상점 운영	회사설립	-	-	-
	삼양유지사료(주)	대두종합가공업	주식취득	-	-	-
	(주)윌그레이트엔 파트너스글로벌	요식업	회사설립	-	-	-
하나로 통 신	(주)한국디지털 케이블미디어센터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제공업	주식취득	-	-	-
현 대 백화점	(주)현대백화점	종합소매업	회사설립	-	-	-
에 스 케 이	-	-	-	(주)넷츠고	인터넷관련 서비스업	피합병
	-	-	-	베스케어(주)	정보·통신업	청산
	-	-	-	이리뚝 코리아(주)	위성관문국 설치 운영	"
	-	-	-	빌플러스(주)	전자상거래업	"
하나로 통 신	-	-	-	(주)하나로 테크놀로지	용역서비스업	지분매각
현대산업 개 발	-	-	-	세일기계(주)	기계장비 임대업	"

\* 출자총액·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한화」, 「에스케이」